



시장제출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장



2018. 4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시장제출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□ 접수의안

의안 번호	의 안 명	요 지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2459	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사회(임팩트)투자조 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시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(임팩트투자)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조합 결성·운용하고자 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출자재원 :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협력사업 투·융자사업비- 출자금액 : 최대 10억 원- 운용사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 <p>▶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</p>	시 장 (기획경제)	2018. 3.29.

□ 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

